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91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김정호·어기구·허종식

최기상・박 정・윤후덕

임미애 · 이연희 · 이훈기

이수진 · 정성호 · 신영대

전재수 · 박홍배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이 원사업자에게 탈취되는 불공정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 개발 동기를 저해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임. 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4년 2월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재의 법적 체계하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러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기술탈취와 관련된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급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술자료의 부

당한 사용 또는 제공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원사업자가 부인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수급사업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게 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술혁신과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제35조의6 및 제35조의7 신설).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를 "제12조의2, 제13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의2.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업자

제3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 "기술유용피해사업자"라 한다"를 "이하 "기술유용피해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 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 게 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 그 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제3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7(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원사업자는 자기

- 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이를 밝힐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제3항 전단 중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본다.
-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행위태양의 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술 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의6, 제3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	제25조의3(과징금) ①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	
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	
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	
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u><단</u>	
<u>서 신설></u>	만,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하도급대금의 5배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	3
까지, <u>제12조의2</u> , 제12조의3,	<u>제12조의2, 제13조</u>
<u>제13조</u> 및 제13조의2를 위반	
한 원사업자	
<u><신 설></u>	3의2. 제12조의3을 위반한 원사
	<u>업자</u>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4항을	_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지	}-
(이하 이 조에서 "기술유용피]
해사업자"라 한다)가 제35조여]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	
우 원사업자 또는 기술자료를	!
제공받은 제3자가 제12조의3제	
4항의 위반행위(이하 "침해형	}
위"라 한다)를 하게 한 목적물	<u>!</u>
등을 판매・제공하였을 때에는	<u>-</u>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
합계액을 기술유용피해사업지	ŀ
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	ļ
다.	

- 1. 2. (생략)
- ② ~ ④ (생 략)
- ⑤ 법원은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

제35조의6(손해액의 추정 등) ①
이하 "기술유용피해사업자"라
<u>한다</u>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5

액을 인정할 수 있다. <u><후단</u> 신설>

<신 설>

수 법원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게 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 그 평가 결과를 고려할수 있다.

제35조의7(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① 제12조의3제4항을 위 반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소송에서 기술유용피해사업 자가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 인하는 원사업자는 자기의 구 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이를 밝힐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법원은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구체적 행 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 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 우에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

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에 관하여는 제35조의2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의2제3항 전단 중 "손해의 등로의 모제3항 전단 중 "손해의 등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이유의 유무 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때"로 본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행위태양의 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원사업자가 정당한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술유용피해사업자가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

으로 인정할 수 있다.